

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 변경이 된 경우만 가능함.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개정(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6)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6)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6)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4)
황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0(6)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0(6)
질소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6)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0(6)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40(15)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나) 일반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8(4)
포름알데히드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별표 15 제1호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황산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20(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2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질소산화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5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일산화탄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염화수소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12(12)
불소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7(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9(12)
납화합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6(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6(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0.18(12)
크롬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0.15(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0.19(12)

별표 15 제1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나) (삭제)	15(4)
황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210(4)
질소산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130(4)
	(1)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4)
	마) (삭제)	
일산화탄소 (pp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	50(12)

	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다) (삭제) 다) 현행 라) 이동 라) 현행 마) 이동	50(12)
염화비닐 (pp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의 회수시설	10
스틸렌 (ppm)	가) 스틸렌 모노머 제조시설	16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티렌 제조시설	16

별표 1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6(15)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7)
	(4) 현행 (3) 이동	12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시설 라) 산재생시설	25 15 10 30 30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5)
질소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170(15) 150(11) 150
염화수소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화합물 (pp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2 2
암모니아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0

(ppm)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리 처리시설	150

별표 1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6(15)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7)
	(4) 현행 (3) 이동	12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5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시설	30
	라) 산재생시설	30

황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5)
질소산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70(15)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0(11)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150
염화수소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화합물 (pp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2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2
암모니아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알칼리 처리시설	30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리 처리시설	150

별표 15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황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0
질소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0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0
납화합물 (mg/Sm ³)	가)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아연화합물 (mg/Sm3)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탄화수소 (THC) (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 산알칼리처리 시설	150

별표 15 제1호가목에 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 생시설	15(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	19(4)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8(12)
	라)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2014 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 생시설	120(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황산 재생시설	180(8)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80(4)
	라)	

	(마)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습식 탈황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 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50(12)
질소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한다)	130(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001 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001 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마)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 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황화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 만인 시설)	115(12)
암모니아 (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30
벤젠 (ppm)	폐수소각시설	6

별표 15 제1호가목에 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염화수소 (pp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4
질소산화물 (pp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35
	다)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라)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 폐가스소각시설	50(12)
먼지 (mg/Sm3)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25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0
황산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160(8)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납화합물 (mg/Sm3)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0.8
아연화합물 (mg/Sm3)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별표 15 제1호가목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 공정의 폐가스 소각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 그램 이상 2톤 미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질소산화물 (ppm)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 설)	70(12)
질소산화물 (ppm)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 설)	70(12)
먼지 (mg/Sm ³)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5 20
황산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60(8)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납화합물 (mg/Sm ³)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0.8
아연화합물 (mg/Sm ³)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별표 15 제1호가목에 9)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황산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90
	나) 황산 제조시설	180(8)
질소산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50
	나) 희질산 제조시설	150
암모니아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2
	나)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화합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3
	나) 인산 제조시설	3
먼지 (mg/Sm ³)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25(10)
	나)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25

별표 15 제1호가목에 9), 10), 11), 13), 14)를 다음 순서로 이동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 별표 1 제4호(기초화학)~22호(시멘트)에 따른 업종(보일러)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10(6)

	31일 이전 설치 유연탄 사용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6(6) 91(6)
황산화물 (ppm)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부생연료유 사용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60(4)
질소산화물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LNG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부생연료유 사용시설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LNG 사용시설	38(4) 60(4) 38(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별표 1 제1호·제2호에 따른 업종			[별표15]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먼지 (mg/Sm ³)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8(6)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6)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6)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6)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3(6)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6)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1(4)		(2) 설비용량 100MW 미만인 액체연료 사용시설(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4)
황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황산화물 (pp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6)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0(6)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80(6)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0(6)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0(6)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에 설치한 시설	70(6)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80(15)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 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3(4)
	<신 설>	
	<신 설>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전기 생산시설	
	(1) 설비용량 100MW이상인 고체연료 사용시설(증기 터빈)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에 설치한 시설	70(6)
	(나)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50(6)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2001 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터빈)	40(15)
	(나) 그 밖의 발전시설(2001 년 7월 1일 이후 2014 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나) 일반보일러	
폼 알데 히드 (pp m)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 간당 24,760,000킬로 칼로리 이상인 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8(4)
	가) 전기 생산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6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 소농도)
먼지 (mg/ 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30(12)

2)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시설(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20(12)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30(12) 20(12) 20(12) 20(12)
황산 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30(12) 30(12) 30(12)
질소 산화 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90(12) 70(12) 90(12)
	로그림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12) 20(12) 15(12) 20(12) 15(12)
황산 화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20(12) 20(12) 30(12)
질소 산화 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70(12) 50(12) 70(12)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 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70(12)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 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5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 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 각시설	7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 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50(12)
일산 화탄 소 (pp 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일산 화탄 소 (pp 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50(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50(12)
염화 수소 (pp 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염화 수소 (pp 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나)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다)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2(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15(12)		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12(12)
			불소 화합 물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생활 폐기 물 소각시설	1.7(12)

3) 영 별표 1 제4호·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나)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 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 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 당 200 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30(12)
황산 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328(4)
질소 산화 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135(4)

(ppm)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지정 폐기 물 소각시설	1.9(12)
납화 합물 (ppm)	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0.16(12) 0.36(12) 0.18(12)
크롬 화합 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 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이상인 의료 폐기 물 소각시설	0.15(12) 0.19(12)

3)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나) (삭제)	15(4)
황산 화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210(4)
질소 산화 물 (ppm)	가) 방향족탄화수소 제조공정 의 가열시설 (1)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 설로 증발량이 시간당	130(4)

	m)	미만인 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150(4)	m)	50톤 미만인 시설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정 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 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 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 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마)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 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미만인 시설)	70(12) 70(12) 121(4) 90(12)		나)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다)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 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라)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 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이상이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마) (삭제)	50(12) 50(12) 121(4)
	일산 화탄 소 (pp 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 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 인 시설) 다)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 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 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50(12) 50(12) 48(12) 45(12)	일산 화탄 소 (pp 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나) 아크로니트릴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 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 인 시설) 다) (삭제) 다) 현행 라) 이동	50(12) 50(12)

마) 부타디엔 고무, 아크릴로니 트릴 부타디엔 고무, 스티 렌 부타디엔 라텍스 또는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제 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미만인 시설) (신 설) (신 설)	200(12)
--	---------

라) 현행 마) 이동	
염화 비닐 (pp m) 가)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또는 염화비닐 모노머 제조공 정의 회수시설	10
스틸 렌 (pp m) 가) 스티렌 모노머 제조시설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 리스틸렌 제조시설	16 16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6(15)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 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신 설)	25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20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 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 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40

4)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제선(製銑)공정 (1)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6(15)
	(2) 소결광(Sinter) 후처리시 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
	(3)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7)
	(4) 현행 (3) 이동	12
	나) 제강(製鋼)공정 (1) 전로(Converter: 고로에 서 생산된 쇳물에서 불 순물을 제거하는 설비) 및 정련로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25

	에 설치한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 시설 라) 산재생시설	15 10 40 44
황산 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193(15)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200(15) 200(11) 200
염화 수소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 화합 물 (pp 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3
암모 니아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5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에 설치한 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연마 시설 라) 산재생시설	15 10 30 30
황산 화물 (pp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100(15)
질소 산화 물 (pp m)	가)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나) 압연공정의 가열로(2007 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 한 시설) 다)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170(15) 150(11) 150
염화 수소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
불소 화합 물 (pp m)	가) 제강공정의 전기로 나)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2 2
암모 니아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30
탄화 수소 (TH C) (pp 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알칼 리 처리시설	150

5)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 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9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 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 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 설)	24
황산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 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180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 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
	나)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용융·용해시설(2007년 2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
	다)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시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 치한 시설)	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
	라)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 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 전에 설치한 시설)	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 융·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 설)	24
황산	마)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 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 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140

화물 (ppm)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질소 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103

화물 (ppm)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질소 산화물 (ppm)	가) 납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기타 비철금속 제조공정의 전처리를 위한 배소로(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0 60
납화합물 (mg/Sm ³)	가)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용해로	1.2
아연 화합물 (mg/Sm ³)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용해로	3 3
탄화수소 (THC)(ppm)	가)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탈지/화성처리/산알칼리처리 시설	150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회수시설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9(4) 19(4) 28(12)
황산화물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34(4)

6)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Sm ³)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회수시설 다)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4) 19(4) 28(12)
	라)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2014년 12월)	20(12)

(ppm)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 황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202(8) 18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건식 황 산 회수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만 해당한다)	265(12)
질소 산화 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 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 한다)	148(4)
	나)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141(12)
황화 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일산화 탄소 (pp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암모 니아 (pp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 설	46
벤젠 (ppm)	폐수소각시설	7

	31일 이전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소각용량이 시 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 톤 미만인 시설	
황산 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 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폐 황산 재생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4년 12월 31 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	120(4)) 180(8)) 180(4))
	라)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만 해 당한다) (마)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습식 탈 황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 당한다)	100(4)) 50(12))
질소 산화 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 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미만인 시설만 해당 한다)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 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한다, 2001년 6월 30일 이 전 설치시설)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 열시설(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한다, 2001년 7월 1일 이 후 설치시설)	130(4)) 130(4)) 50(4)
	라) 중질유 분해공정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마) 폐수·폐기물·폐가스 소 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0(1 2) 70(12)

황화 수소 (pp m)	가) 석유정제품 가열시설	3
	나) 석유정제품 황 회수시설	3
일산 화탄 소 (pp m)	가) 중질유분해공정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15(12)
암모 니아 (pp m)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가열시 설	30
벤젠 (pp m)	폐수소각시설	6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염화 수소 (pp 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 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 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질소 산화 물 (pp 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93
	다)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신 설>	
	<신 설>	

7) (현행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염화 수소 (pp m)	클로로알칼리 제조공정 염산제 조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 공정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4
질소 산화 물 (pp m)	가) 이산화티타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50
	나) 실리카 제조공정 건조시설	135
	다)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 늄 제조공정 소성시설	145
	라)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 폐가스 소각시설	50(12)
먼지 (mg/ Sm ³)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25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신 설>	
질소 산화 물 (pp m)	<신 설>	
일산화탄	<신 설>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20
황산 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 시설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공정 소성 시설	160(8) 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5
납화 합물 (mg/ Sm ³)	황산 제조공정 황산제조시설	0.8
아연 화합 물 (mg/ Sm ³)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 용해시설	3

8)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 공정의폐가스 소각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질소 산화 물 (pp m)	옥탄올 또는 부탄올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70(12)
일산화탄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의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	48(12)

소 (ppm)		
시아 화수 소 (ppm)	<신 설>	
벤젠 (ppm)	<신 설>	
포름 알데 히드 (ppm)	<신 설>	
탄화 수소 (ppm)	<신 설>	
크롬 화합 물 (mg/Sm ³)	<신 설>	

8)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황산 화물 (ppm)	(신 설) 황산 제조시설	218(8)

소 (ppm)	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 인 시설)	
시아 화수 소 (ppm)	도료 제조시설	3
벤젠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5 6 5
포름 알데 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 시설	5 6
탄화 수소 (ppm)	가) 염료 제조시설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다) 도료 제조시설 라) 플라스틱·고무첨가제 제조시설	180 180 180 180
크롬 화합 물 (mg/Sm ³)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0.3

9) 현행 8) 내용 이동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황산 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나) 황산 제조시설	90 180(8)
질소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50

질소 산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68
	나) 희질산 제조시설	195
암모니아 (ppm)	(신 설)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 화합물 (ppm)	(신 설) 인산 제조시설	3
	(신 설)	

9)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염화수소 (ppm)	화학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공정의 표백시설	3

10)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황산 화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90
	나) 황산 제조시설	180(8)
질산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50

산화물 (ppm)	나) 희질산 제조시설	150
암모니아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2
	나)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 화합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3
	나) 인산 제조시설	3
먼지 (mg/Sm3)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나)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 시설	25(10) 25

10) 현행 9) 내용 이동

11) 현행 10) 내용 이동

화물 (ppm)	나) 희질산 제조시설	150
암모니아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2
	나) 질산암모늄(초안) 제조시설	12
불소 화합물 (ppm)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3
	나) 인산 제조시설	3
먼지 (mg/ Sm ³)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25(10)
	나)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25

11)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탄화수소 (ppm))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가열시설 및 용융·용해시설)	200

12)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1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14)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신 설)

12) 현행 11) 내용 이동

13) 현행 12) 내용 이동

14) 현행 13) 내용 이동

15) 현행 14) 내용 이동

16) 영 별표 1 제4호(기초화학)~22호(시멘트)에 따른 업종(보일러)

오염 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 기준 (표준산소 농도)
먼지 (mg/ Sm ³)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10(6)

황산 화물 (ppm)	31일 이전 설치 유연탄 사용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석유코크스 사 용시설	16(6)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석유코 크스 사용시설	91(6)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 부생연료유 사용 시설	60(4)
	나)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LNG 사용시설	38(4)